

투자설명서 등 변경안내

투자설명서(간이투자설명서 포함)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년 6월 30일(화)

□ **대상 펀드** :

-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-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-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□ **투자설명서 변경대비표**

1.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신설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신설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신설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, 가. 매입, (3)종류별 가입자격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, 나. 환매, (3)환매수수료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: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- 선취판매수수료: 없음 - 후취판매수수료: 없음 - 환매수수료: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- 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10% - 판매회사보수: 연 0.50% - 신탁업자보수: 연 0.04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연 0.025%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 나. 과세	클래스 신설에 따른 과세내용 업데이트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	(4)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에 따른 연금저축

		<p>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“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표 1_정정전] 참조</p>	<p>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(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, 이하 ‘연금계좌’라 한다)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. 관련 사항은 판매회사의 “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” 또는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표 1_정정후] 참조</p>
--	--	---	---

2.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신설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신설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신설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, 가. 매입, (3)종류별 가입자격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, 나. 환매, (3)환매수수료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: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- 선취판매수수료: 없음 - 후취판매수수료: 없음 - 환매수수료: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- 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10% - 판매회사보수: 연 0.50% - 신탁업자보수: 연 0.04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연 0.025%
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	클래스 신설에 따른 과세내용	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	(4)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

나. 과세	업데이트	<p>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표 1_정정전] 참조</p>	<p>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(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, 이하 '연금계좌'라 한다)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. 관련 사항은 판매회사의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 또는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[표 1_정정후] 참조</p>
-------	------	--	--

3.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 1 부.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신설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		
1. 집합투자기구의 명칭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신설
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신설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, 가. 매입, (3)종류별 가입자격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
11. 매입, 환매, 전환 기준, 나. 환매, (3)환매수수료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: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- 선취판매수수료: 없음 - 후취판매수수료: 없음 - 환매수수료: 없음
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,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	클래스 신설	(추가)	종류 C-P2 - 집합투자업자보수: 연 0.10% - 판매회사보수: 연 0.70% - 신탁업자보수: 연 0.04% -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: 연 0.025%

<p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, 나. 과세</p>	<p>클래스 신설에 따른 과세내용 업데이트</p>	<p>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, 관련 사항은 "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"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표 1_정정전] 참조</p>	<p>(4)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계좌 (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계좌를 합하여, 이하 '연금계좌'라 한다)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, 연금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,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 등으로 과세합니다. 관련 사항은 판매회사의 "연금저축계좌설정약관" 또는 관련 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[표 1_정정후] 참조</p>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

[표1_정정전]

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]↵

구분↵	주요 내용↵
납입요건↵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↵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. 단, 이연퇴직소득 및 다른 연금계좌로부터 계약 이전하여 납입된 금액은 제외)↵
연금수령요건↵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↵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↵
세액공제↵	연간 연금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↵ (지방소득세 포함)↵
연금수령시 과세↵	연금소득세 5.5~3.3%(나이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↵ 단, 이연퇴직소득은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% 적용↵
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↵ (연금수령으로 구분)↵	천재지변↵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↵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(기본공제대상에 한함)의 3개월 이상 요양↵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, 해산결의, 파산선고↵
부득이한 사유로 인출시 과세↵	연금소득으로 3.3~5.5% 분리과세↵
분리과세한도↵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제외)↵
연금외수령시 과세↵	기타소득세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↵ 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↵
해지가산세↵	없음↵
연금계좌 승계↵	상속인(배우자)가 승계 가능↵

*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(원천징수세액의 10%)를 포함함.↵

※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↵

[연금계좌 과세 주요 사항]↵

구분↵	주요 내용↵
납입요건↵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↵
연금수령요건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 신청 후 인출↵ - 연금계좌의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 (다만, 미연퇴직소득은 제외)↵ -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↵
세액공제↵	연간 400만원 이내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(연간 700만원을 한도로 함)의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↵
연금수령시 과세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: 연금소득으로 과세, 세율 5.5~3.3% (지방소득세 포함, 연형에 따라 변경, 종합과세 가능)↵ -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: 연금소득으로 과세, 미연퇴직소득세의 70%↵
연금외수령시 과세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및 연금계좌의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 등: 기타소득으로 과세, 세율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↵ -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: 퇴직소득으로 과세, 미연퇴직소득세↵

※ 연금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, 정부 정책의 변경 및 개별 가입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↵

집합투자규약 변경안내

집합투자규약 일부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.

□ **효력발생일** : 2015년 6월 30일(화)

□ **대상 펀드** :

-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-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-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□ **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**

1. AB 글로벌 고수익 증권 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 의 종류 및 명칭 등) 제3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9. 종류 C-P2 수익증권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제1 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9. 종류 C-P2 수익증권
제25조(판매가격) 제 1항 발행 및 예탁) 제1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9. 종류 C-P2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의한 퇴직연금 가입자
제39조(보수) 제3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(종류 C-P2)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0.10% 2. 판매회사보수율: 연 0.50% 3. 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4%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
제41조(환매수수료) 제2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9. 종류 C-P2 수익증권: 환매수수료 없음

2. AB 위안화 플러스 증권 자투자신탁 (채권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제3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9. 종류 C-P2 수익증권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제1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9. 종류 C-P2 수익증권
제25조(판매가격) 제1항 발행 및 예탁) 제1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9. 종류 C-P2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
제39조(보수) 제3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(종류 C-P2)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0.10% 2. 판매회사보수율: 연 0.50% 3. 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4%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
제41조(환매수수료) 제2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9. 종류 C-P2 수익증권: 환매수수료 없음

3. AB 미국 그로스 증권 투자신탁 (주식-재간접형)

항목	정정사유	정정전	정정후
제3조(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명칭 등) 제3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12. 종류 C-P2 수익증권
제10조(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) 제1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12. 종류 C-P2 수익증권
제25조(판매가격) 제1항 발행 및 예탁) 제1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12. 종류 C-P2 수익증권: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 가입자

제39조(보수) 제3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(종류 C-P2)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: 연 0.10% 2. 판매회사보수율: 연 0.70% 3. 신탁업자보수율: 연 0.04%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: 연 0.025%
제41조(환매수수료) 제2항	클래스 신설	(추가)	12. 종류 C-P2 수익증권: 환매수수료 없음